

진출가이드북

베트남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2019. 12.

제 목 차 례

제1장 베트남 국방조달시장 개관	3
1. 국가개요	3
2. 국방조달시장 현황	4
1) 방위산업 시장	4
2) 국방조달 시장	10
3. 국방조달 운영체계	11
1) 근거 법령	11
2) 국방조달 운영조직	11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13
1) 입찰 기본원칙	13
2) 일반 조달제도	13
3) 절충교역 제도	16
4) 주요 조달지원제도	17
제2장 국방조달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22
1. 입찰준비단계	22
2. 입찰참여단계	28
1) 입찰참가자격	28
2) 입찰평가 및 심사	39
3. 계약체결 및 협상 단계	33
4. 사후관리	46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41
<부록> 베트남 방위사업 유관기관 리스트	51

표 차 례

<표 1-1> 베트남 병력 현황 (2017)	4
<표 1-2> 베트남의 육군 군사력 개요 (2017)	4
<표 1-3> 베트남의 공군 군사력 개요 (2017)	5
<표 1-4> 베트남의 해군 군사력 개요 (2017)	6
<표 1-5>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주요 국가별 무기 수입 현황 (2007-2016)	8
<표 1-6>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품목별 무기 수입 현황 (2007-2016)	9
<표 1-7> 베트남 군 별 방위지출 규모	10
<표 1-8> 항목별 베트남 방위비용 지출	10
<표 1-9> 베트남 주요 입찰방식	14
<표 1-10> 베트남 특수 조달유형	15
<표 1-11> 입찰보증제도	15
<표 1-12> 베트남 주요 조달지원정책 및 관련규정	17
<표 2-1> 입찰유형별 입찰자 선정과정	22
<표 2-2>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필수발급 및 제외분야	23
<표 2-3> 방위사업참여 적합성 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23
<표 2-4> 방위산업 관련 주요기관 리스트	27
<표 2-5> 베트남 입찰참가 자격조건	28
<표 2-6> 입찰평가요소 및 심사 근거자료	30
<표 2-7> 입찰대상별 입찰서류 평가방법 및 기준	30
<표 2-8> 입찰완료 후 전체 서류 심사기간	31
<표 2-9> 계약체결 시 활용되는 계약서 종류	33
<표 2-10> 일반적인 계약체결 조건	33
<표 2-11> 방산제품 및 서비스 분류별 계약방식	34
<표 2-12> 낙찰자 선정 관련 사안별 이의제기 건의 절차	37

그림 차례

<그림 1-1> 베트남 무기 수입 추세 (1950-2016)	8
<그림 1-2> 베트남의 주요 국가별 무기 수입 비중	8
<그림 1-3> 베트남의 주요 품목별 무기 수입 비중	9
<그림 1-4> 베트남 국방부 조직도	11
<그림 2-1>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발급절차	24
<그림 2-2> 입찰참여 금지행위별 주요 제재조건	36

제 1 장

베트남 국방조달시장 개관

1. 국가개요
2. 국방조달시장 현황
3. 국방조달 운영체계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제1장 베트남 국방조달시장 개관

1. 국가개요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도	하노이(인구 740만 명)	
행정구역	5개의 중앙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와 58개 성으로 구성	
독립일	1945년 9월 2일	
인구	9,704만 명(2019년, 베트남 통계청)	
언어	베트남어	
면적	약 33만 966.9km ² (한반도의 약 1.5배),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경지면적 23%	
민족구성	Viet족(89%) 외 54개 소수민족	
종교	불교(12%), 가톨릭(7%) 등	
기후	북부 아열대(여름이 긴 사계절)/남부 열대몬순(건기와 우기)	
정치구조	공산당 1당제(임기 5년 단원제)	
국가 GDP	\$2,414억 USD	
1인당 GDP	\$7,482 USD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155억 USD	
대외 외국인직접투자	\$5억 9,800만 USD	
외환 보유고	\$730억 USD 이상	
화폐단위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기준환율	23,171VND/USD(2019. 12. 12. 기준)	
시차	2시간 늦음(G.M.T +7시간)	
외교관계	186개국 수교(200개국 무역, 약 80개국이 베트남 투자)	
對한국수교	1992년 12월 22일 / 한-ASEAN FTA (2007sus) / 한-베 FTA(2015년)	

자료 : KOTRA 국가정보(2019) 자료 재구성

2. 국방조달시장 현황

1) 방위산업 시장

(1) 군사력

- 베트남 현역군은 대부분 육군 및 방공군에서 2년, 해군, 공군 및 일부 특수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징집병으로 구성되며, 전략후방군으로 알려진 3~400만 명의 전략적 예비군, 그리고 5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
- 100만 명의 인민자위대, 내무부 하 50만 명의 인민지역군, 국방부 후원을 받는 6만 명의 국경수비대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감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상민병대가 존재함

<표 1-1> 베트남 병력 현황 (2019)

구분	Total strength	Army	Air force	Navy
Active personnel	485,000	412,000	30,000	43,000
Reserves	5,000,000	4,500,000	30,000	70,000

자료 : IHS Jane's data - Armed forces (2019.5.); Forecast International 2019

<표 1-2> 베트남의 육군 군사력 개요 (2019)

Strength : 412,000

Primary combat units 58 Infantry divisions 3 Mechanised infantry divisions 10+ Armour brigades 10 Artillery brigades Armoured vehicles T-54/55 main battle tank T-62 main battle tank Type59 main battle tank Type62 light tank Type63 light tank PT-76 light tank BMP-1 infantry fighting vehicle BTR-40 armoured personnel carrier BTR-60P armoured personnel carrier BTR-152 armoured personnel carrier YW531 armoured personnel carrier M113 armoured personnel carrier	Artillery 155mm M114 howitzer 152mm D-1 howitzer 122mm D-30 howitzer 122mm M1938 (M-30) howitzer 122mm Type 54-1 howitzer 105mm M101 howitzer 130mm Type63/ Type70 multiple rocket system 122mm BM-21 multiple rocket system 107mm Type63/ Type81 multiple rocket system Ground-based air defence systems 2K12Kub (SA-6 'Gainful') self-propelled SAM 9K31 Strela-1 (SA-9 'Gaskin') self-propelled SAM
--	--

Base : 22

Name	Latitude	Longitude
Binh Xuyen	21.276583	105.6478357
Yen Thuy	20.4032297	105.6156055
Pho Yen	21.4597758	105.8424236
Bim Son	20.088642	105.8121989
Khe Sanh	16.6280556	106.7366667
Kon Tum	14.3869444	108.0277778
Lang Giang	21.358661	106.2601178
Lang Son	21.8433333	106.7530556
Nho Quan	20.2379536	105.7924166
Buon Ma Thuot	12.6744444	107.9466667
Hai Phong	20.8172222	106.6319444

Hanoi	21.0313889	105.8416667
Binh Dinh	14.00088	109.0579921
Tam Diep	20.2309643	105.8140242
Phu Loc	20.2456918	105.7860873
Quang Tri	16.8130556	107.0702778
Bien Hoa	10.9025	106.8655556
Di An	10.8844249	106.7410397
Minh Tri	21.2836611	105.7458919
Cam Ranh	11.9511111	109.2108333
Hue	16.4844444	107.5741667
Can Tho	10.0525	105.7636111

Order of battle (전투서열)		
Formation	Hierarchy	Base
1st Corps	300th Engineer Brigade 308th Division 312nd Division 320th Division 368th Air Defence Division 390 Division 46th Artillery Brigade	Tam Diep
2nd Corps	165th Artillery Brigade 204th Armoured Brigade 220th Engineers Brigade 304th Division 304th Division 674th Air Defence Brigade	Lang Giang
3rd Corps	10th Division 198th Special Force Regiment 274th Armoured Brigade 312th Air Defence Regiment 31st Division 321st Motorised Infantry Division 675th Artillery Regiment	Pleiku
4th Corps	24th Artillery Regiment 324th Division 38th Chemical Company 429th Special Force Regiment 550th Engineer Regiment 72nd Air Defence Brigade 7th Division 9th Division	Di An

자료 : IHS Jane's data - Army (2019.5.)

<표 1-3> 베트남의 공군 군사력 개요 (2019)

Strength Regular: 30,000			
Combat aircraft - multirole fixed wing Su-27 Su-22 Su-30		Logistics aircraft - transport An-26 C295	
Base : 14 (Binh Xuyen, Yen Thuy, Pho Yen, Bim Son, Khe Sanh, Kon Tum, Lang Giang, Lang Son, Nho Quan, Buon Ma Thuot, Hai Phong, Hanoi, Binh Dinh, Tam Diep, Phu Loc, Quang Tri, Bien Hoa, Di An, Minh Tri, Cam Ranh, Hue, Can Tho) * 3개의 공습사단으로 나뉘며 각 사단은 3개의 공대로 구성; 3개의 수송연대, 14개의 방공사단, 6의 레이더 여단 존재			
Order of battle (전투서열)			
Hierarchy	Base	Type	Primary Role
Military Command	Hanoi	Service Support	Command and Control
370th Air Division	Bien Hoa Air Base	Fixed Wing	Combat
917th Helicopter Regiment	Tan Son Nhat International Airport	Rotary Wing	Logistics
935th Fighter-Bomber Regiment	Bien Hoa Air Base	Fixed Wing	Combat
937th Fighter-Bomber Regiment	Phan Rang Air Base	Fixed Wing	Combat
371st Air Division	Bai Thuong Airport	Service Support	Command and Control
910th Air Training Regiment	Dong Tac	Fixed Wing	Training
916th Helicopter Regiment	Hoa Lac Air Base	Rotary Wing	Logistics
918th Air Transport Regiment	Gia Lam Domestic Airport	Rotary Wing	Logistics
921th Fighter-Bomber Regiment	Noi Bai International Airport	Fixed Wing	Combat
923rd Fighter-Bomber Regiment	Bai Thuong Airport	Fixed Wing	Combat
927th Fighter Regiment	Kep Air Base	Fixed Wing	Combat
931st Fighter-Bomber Regiment	Yen Bai Air Base	Fixed Wing	Combat
372nd Air Division	Da Nang International Airport	Mixed Wing	Combat
925th Fighter Regiment	Phu Cat Air Base	Fixed Wing	Training
929th Fighter Regiment	Da Nang International Airport	Fixed Wing	Combat
930th Helicopter Regiment	Da Nang International Airport	Rotary Wing	Logistics
Air Force School	Cam Ranh	Service Support	Command and Control
920th Air Training Regiment	Cam Ranh	Fixed Wing	Training

자료 : IHS Jane's data - Air Force (2019.8.)

<표 1-4> 베트남의 해군 군사력 개요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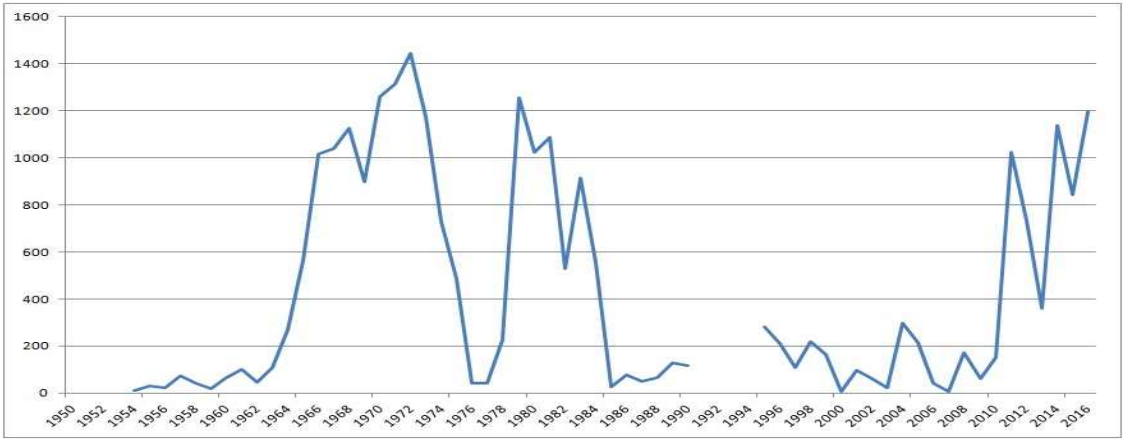
Active personnel : 15,000		
Submarines Type 035G (Ming) class Corvettes Type 056(C13B) class Patrol ships Hainan class (Type 037) Madhumati class (Sea Dragon) Karnaphuli class Island class Akshay class Haizhui class Meghna class River class Defender class Padma class Amphibious warfare ships Shah Amanat class LCU 1512 class Yuch?in class LCVP class	Frigates Modified Ulsan class Hamilton class Type 053H2 class Osman class Fast attack craft Durdharsha class (Huangfen) (Type 021) Durbar class (Hegu) (Type 024) Huchuan class (Type 026) Type 123K class (Chinese P4) Sea Dolphin class Shaheed class (Shanghai II) (Type 062) Mine-warfare vessels Shapla class Sagar class (T43) Amphibious warfare ships Shah Amanat class LCU 1512 class Yuch?in class LCVP class Maritime patrol aircraft - rotary wing AW109 Dornier 228	
Base : 10 (BNS Haji Mohsin, BNS Issa Khan, BNS Titumir, BNS Shaheed Moazzam, Forward Base Khepupara, Chittagong, BNS Mongla, Forward Base Hiron Point, BNS Patenga Naval Hospital., BNS Ulka)		
Base		
Name	Latitude	Longitude
BNS Haji Mohsin	23.803333	90.403611
BNS Issa Khan	22.283278	91.792123
BNS Titumir	22.843188	89.552186
BNS Shaheed Moazzam	22.523208	92.219767
Forward Base Khepupara	21.976861	90.232778
Chittagong	22.228333	91.800278
BNS Mongla	22.521581	89.582911
Forward Base Hiron Point	21.816373	89.462192
BNS Patenga Naval Hospital	22.284167	91.788056
BNS Ulka	22.262829	91.784344

자료 : IHS Jane's data - Navy (2019. 8.)

(2) 군수품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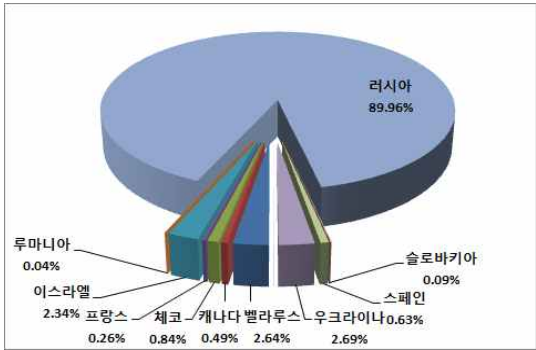
-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영토수호를 위한 육군 중심의 조달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의 남중국해 분쟁 등에 기인하여 군사적 중심이 영공 및 영해 관리로 이전해 감에 따라 해군 및 공군에 대한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임
 -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해군 및 공군의 상대적 약점을 해소하고 영공 및 영해 자산관리의 필요성 대두에 따른 주요 계획 등을 2017년에 발표될 새로운 ‘국방 백서(Defense White Paper)’에 명시함
- 1950년부터 2019년까지의 베트남 무기수입 추세를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 시기인 1960년에서 1975년까지의 약 15년간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민족 해방전선과 남베트남 정부 사이의 내전적 성격의 전쟁이었으나, 1964년 미국이 톤킨 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을 폭격한 뒤 북베트남과의 전면전으로 확대 되었고, 1972년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의 비밀 정전협상 및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종전 등 전쟁의 경과와 베트남 무기수입 증감폭이 정확히 일치함
- 또한, 1975년에서 1979년까지 5년간 이어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과 1978년 베트남 정치국의 중국 주적 규정 및 구소련과의 우호협력조약 서명에 따른 공산화 등 베트남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무기구입 추세 또한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후 정치적 안정 및 국제정세 안정화에 따라 무기수입 또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 심화와 국가 안전보장 확립을 위하여 과거 획득한 무기의 노후화 등에 따른 군 현대화 추진에 비례하여 최근 점차 증가 추세로 전환됨

<그림 1-1> 베트남 무기 수입 추세 (195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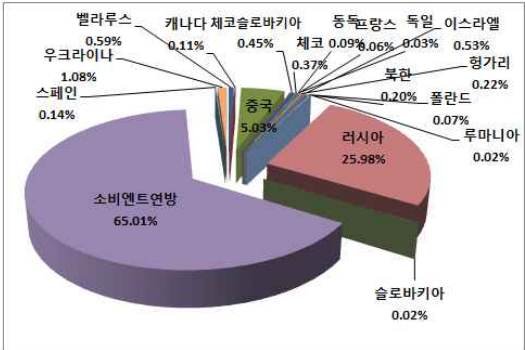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 12. 29.) 재가공

<2007년-2016년간 누적 비중>



<1950-2016년간 누적 비중>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7. 9. 4.) 재가공

<그림 1-2> 베트남의 주요 국가별 무기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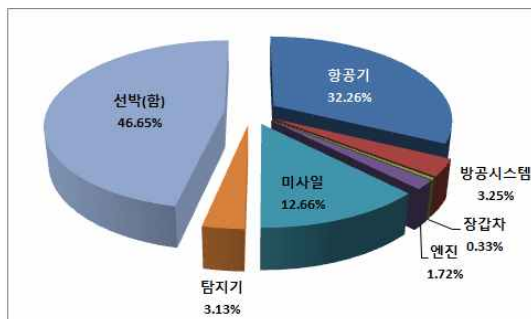
<표 1-5>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주요 국가별 무기 수입 현황 (2009-2018)

국명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적	비율(%)
벨라루스						60	60	30	23		173	2.61
캐나다				3	5	16	4				27	0.40
체코						12	12	24			48	0.72
프랑스			15								15	0.22
인도네시아										8	8	0.12
이스라엘	6				26	14	7	78	142	142	416	6.28
루마니아	1	1	0								2	0.03
러시아	55	151	985	768	313	1062	742	706	467	327	5,574	84.16
슬로바키아						5		5			11	0.16
한국									50	60	120	1.81
스페인						12	24				36	0.54
우크라이나			20	18	18	38	13	13	10	10	140	2.11
국명 미상								1			1	0.01
합계	61	152	1,021	788	362	1,218	862	858	755	546	6,6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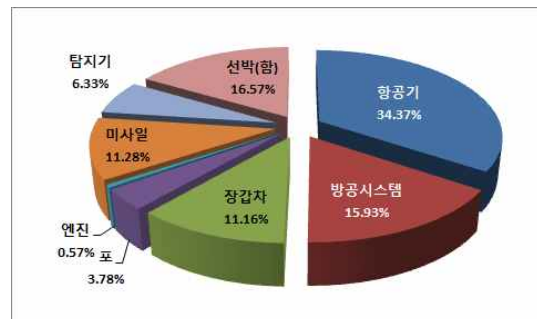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 12. 12) 재가공

- 1950-2019년까지 베트남의 주요 무기교역국을 살펴보면, 소비에트연방이 65.01%, 러시아가 25.98%로 가장 많았으며, 1980년대까지 소비에트연방에 크게 의존해 오다가 이후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구소련 지역이었던 러시아 및 벨라루스 등과 집중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현재 90% 이상이 CIS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10년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약 90%), 그 다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순으로 이어짐
 - 이는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의존도 및 러시아와의 연계무역협정에 기인한 정치적·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음을 의미함

<2007년-2016년간 누적 비중>



<1950-2016년간 누적 비중>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 12. 29.) 재가공

<그림 1-3> 베트남의 주요 품목별 무기 수입 비중

<표 1-6>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품목별 무기 수입 현황 (2009-2018)

품목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적	비중(%)
항공기	1	111	455	553	5	246	244	220		8	1,842	27.81
방공시스템						60	60	65	90	90	375	5.66
장갑차	6							1		120	127	0.19
엔진			20			15	17	33	10	10	85	1.28
미사일	40	41	132	63	53	123	123	116	84	84	915	13.81
탐지기	15		15	18	44	50	12	24	23		206	3.11
선박(함)			400	100	260	646	386	736	549	235	3,074	46.41
합계	62	152	1,022	734	362	1,140	842	1,195	755	546	6,623	100.00

자료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검색 : 2019. 12. 29.) 재가공

- 또한 2009-2019년까지 베트남의 주요 품목별 무기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항공기 27.81%, 선박(함)이 46.41% 등이 주로 수입되었음
-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선박(함)의 수입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장갑차 및 방공시스템의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인 미사일 구매 등 기존의 육군중심의 조달에서 영토와 영공 수호를 위한 해군 및 공군 중심의 조달로 옮겨가고 있는 베트남 군사전략과도 일맥상통함

2) 국방조달 시장

- 베트남 군 별 방위지출을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육군이 전체 지출의 대부분을 배정 받았으며 2019년 핵심 방위예산의 약 59%를 차지함

<표 1-7> 베트남 군 별 방위지출 규모

(단위 : US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군	840.48	883.69	936.42	994.66	1,062.52	1,138.98	1,239.01	1,313.07
육군	2,751.28	2,867.11	3,011.39	3,170.43	3,357.01	3,566.94	4,851.06	5,053.83
방위 전반	188.07	196.64	207.25	218.93	232.6	248.01	880.84	927.24
해군	863.69	907.96	962.01	1,021.67	1,091.24	1,169.59	1,224.27	1,327.96

출처 : IHS Jane's Defence Budget

- 2019년 베트남 국방조달 예산은 약 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IHS Jane's Defense Budget)
 - 2023년까지의 국방조달 예산은 86억 달러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
- 영토분쟁 등에 따른 연안영토 수호를 위하여 전체 조달예산 중 해군과 공군의 조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됨

- 2019년 기준 해군은 전체 조달비용의 13%, 공군은 15%, 육군은 59%를 배정 받았으며 동 비율은 단기간 내에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1-8> 항목별 베트남 방위비용 지출

(단위 : US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군인(장병)	2,558.89	2,656.06	2,778.00	2,912.21	3,072.91	3,253.65	4,814.66	5,025.81
작전 및 유지보수	1,051.97	1,106.52	1,173.04	1,246.49	1,332.07	1,429.05	1,376.79	1,465.76
기타	122.62	125.75	130.41	135.51	141.55	151.14	368.79	388.00
조달	868.16	922.21	987.2	1,059.21	1,139.91	1,228.16	1,557.08	1,659.76
연구개발	41.88	44.86	48.42	52.36	56.93	61.52	77.86	82.77

출처 : IHS Jane's Defence Budget

3. 국방조달 운영체제

1) 근거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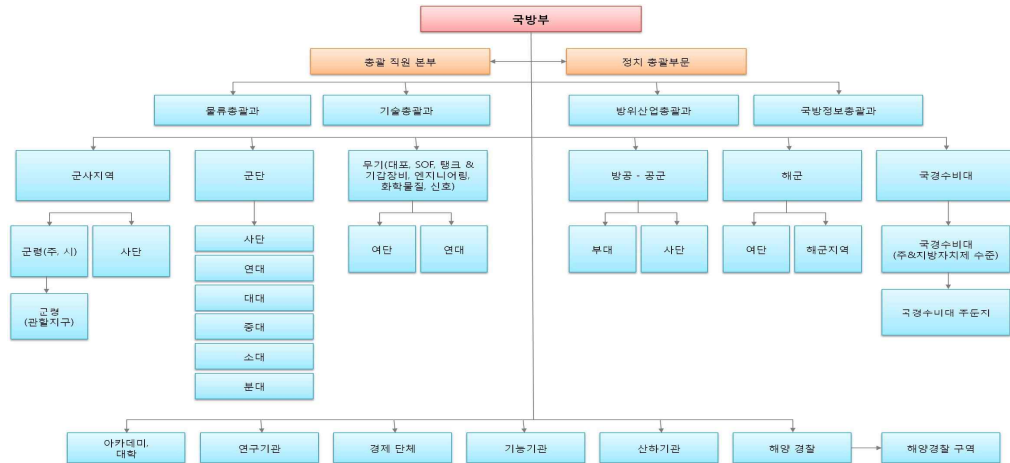
- 베트남은 국방조달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지 파트너십 장려를 위하여 일반조달과 마찬가지로 입찰법(43/2013/QH13)에 따라 조달을 시행함
- 그 외 베트남 방위산업에 대해 간략히 규정하고 있는 국방법(39/2005/QH11) 및 방위산업조례(02/2008/PL-UBTVQH12), 방위산업조례 시행령(46/2009/NĐ-CP), 방위산업 참여조건 및 절차결정(111/2009/QĐ-TTg), 방위산업 참여조건 및 절차결정 시행규칙(34/2012/TT-BQP)등이 존재함

2) 국방조달 운영조직¹⁾

- 베트남 국방조달은 국방부에서 담당함
 - 국방부 내 방위산업총괄과(GDDI)에서 방산제품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지휘, 관리하며 무기조달을 담당함
 - 기술이전 및 베트남 국내 R&D 역량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방부 내의 기술총괄과 (General Department of Technology, GDT)에서 담당함

1) 베트남 국방조달 관련 예산, 조달 및 프로세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국가기밀로 간주되며, 2009년 이후 국방 프로세스에 대한 점진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업무분장 및 프로세스 세부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상황이므로 IHS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Vietnam(2017)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국방부(MND) 홈페이지를 통해 획득가능한 정보로 해당 내용을 구성함

<그림 1-4> 베트남 국방부 조직도



출처 : 베트남 국방부 홈페이지(www.mod.gov.vn) 내용 재구성

- 베트남 공산당(CPV)의 중앙군사위원회(Central Military Party Committee, CMPC)는 군사 및 국방 지침, 임무, 국방계획, 국방정책 및 조달 프로그램 등 모든 핵심 국방문제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함
 - CMPC는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책임지고 있으며 정책, 프로그램, 당사국의 지침 및 결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베트남 인민군 구축을 위한 조치 및 인민군 인사 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국방부 내 정치총괄부문(General Political Department)을 지휘함
 - 국방부는 CMPC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침, 조치 및 행동계획을 제의하고 직접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은 공산당 정치국(CPV Politburo) 멤버임
- 특정 조달 프로젝트의 계약자 혹은 조달품목 승인 결정은 CMPC 및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회부되어 결정되나, 외국계약자가 관여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계약에 대한 최종 승인을 결정함
 - 정부령 12/2006/ND-CP²⁾에 따라 방산제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계약은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하나, 사실상 국방부의 상위기관인 공산당의 승인을 받은 조달프로젝트의 경우, 국방부의 최종승인은 단순한 직인 날인과 같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물품은 수상의 결정에 따라 수입 및 수출을 결정하며, 수상의 결정에 기인하여公安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해당 수출입에 대한

2) Decree Making Detailed Provis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Commercial Law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Purchases and Sales of Goods; And Agency for Sale and Purchase, Processing and Transit of Goods Involving Foreign Parties(Hanoi, 23 January 2006)

허가증 발급 관련 규정을 제공해야 함³⁾

- 또한, 무기, 탄약, 폭발물 및 고위험 제품의 베트남 영토를 통한 이송은 수상의 허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⁴⁾
- 무기, 탄약 및 군사장비, 동기화 기기 및 그 자재 등 국방용 특수자재의 수출입 업무 및 국방용 물품, 방위생산용품, 정제공급품 등 국가 예비 용품의 관리 및 보존은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인 VAXUCO에서 담당함

4. 국방조달시장의 특성

1) 입찰 기본원칙

- 낙찰자 선정 시 공평성, 투명성 및 효율성 보장을 명시함⁵⁾
 - 2008년 5월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조달법 시행령에서 이미 공공조달의 자유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의 다른 입찰 규정에서도 입찰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수시 감사 등을 실시하고 경쟁 입찰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됨
 - 2013년 개정된 입찰법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및 공공조달 신문을 사용한 입찰 정보 공개, 재량권 제한 및 규정준수를 통한 집행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2) 일반 조달제도

(1) 주요 입찰방식

- 입찰법이 적용되는 수요기관의 프로젝트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물품, 자문 서비스, 비 자문 서비스, 건설에 대한 낙찰자 선정을 시행함
 - 국기기관, 정부기관, 산하 기관 등 국가예산을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
 - 국영기업 프로젝트
 - 상기 프로젝트 이외에 총사업규모의 30% 혹은 2,500만 미국달러가 국가예산 및 국영기업 예산에 포함된 프로젝트

3) 12/2006/ND-CP 제10조의 6

4) 12/2006/ND-CP 제40조의 2

5) 베트남 입찰법 제3조 참조

- 국가기관 및 공공서비스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 프로젝트
-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물품 구매 프로젝트
-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매
- 토지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PPP 형식으로 진행하며, 석유분야 관련 프로젝트, 광산 및 석유 탐사, 채굴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프로젝트 범위에서 제외됨
- 입찰법 제20조~26조에 의거하여 입찰방식의 유형을 일반공개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경쟁오퍼, 직접구매, 자율구매, 특별구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방조달의 경우, 무기체계 조달을 제외한 방산물자 조달 시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함

<표 1-9> 베트남 주요 입찰방식

구분	주요 내용
일반공개입찰	■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입찰참가자 수를 제한하지 않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함
제한입찰	■ 고급기술이나 특정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입찰참여자로 제한하여 실행함 (통상 5개 업체 이내) ■ 입찰참여자 리스트는 책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명입찰	■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업체를 지명하여 실행할 수 있음(우리나라의 수의계약과 같음) - 긴급 프로젝트 : 재해 극복 프로젝트, 국가기밀 보안 프로젝트, 방역대책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 프로젝트 등 - 국가 주권 및 국경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 기존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자문서비스, 비자문서비스, 물품구매 : 기존과 기술일치 요구, 저작권 문제 존재, 연구 및 시험 목적 등 - 예술, 건축 작품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우선 지명을 함
경쟁오퍼	■ 정부의 규정된 자금한도(20억 동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에 실행되며, 대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입찰에서 주로 활용됨 - 간단한 비 자문 입찰 - 일반물품 구매 입찰 (표준규격) - 승인된 건축도면이 있는 간단한 건설입찰 ■ 주로 3개 이상의 오퍼를 받아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함
직접구매	■ 1년 이내에 기 완료된 프로젝트에서 추가구매가 필요하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물품의 구매수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활용됨 -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낙찰자가 주요 대상임 - 이전 프로젝트와 내용, 성격이 유사하고 기존 프로젝트 규모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직접구매 입찰결과 승인일 기준은 이전 프로젝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자율구매	■ 프로젝트 담당기관이 능력, 기술, 재정, 경험 등 요구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경우에 스스로 집행할 수 있음
특별구매	■ 상기 입찰형식에 모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 해당 기관은 수상에게 직접 기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특별입찰을 실행할 수 있음 (MPI와 협의를 거침)

- 다음과 같은 조건의 성립 시 국제입찰이 시행됨(입찰법 제15조 제1항)
 - 프로젝트 자금 투자자가 국제입찰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정부기관 혹은

민간기업 일 수 있음)

- 물품구매 시 그 물품의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 시 요청되는 규격, 품질, 가격 등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해당 물품이 베트남 시장 내에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실행하지 않음)
- 자문 서비스, 비 자문 서비스 및 건설 관련 입찰의 경우, 국내업체의 공급역량이 부족하여 진행할 수 없을 경우
- 투자법에 규정된 투자 제한의 경우를 제외한 토지사용 프로젝트는 PPP 형태로 진행함
- 그 외 베트남의 특별한 조달유형으로는 집중구매와 연속구매 등을 두고 있음 (입찰법 제44조~제47조)

<표 1-10> 베트남 특수 조달유형

구분	주요 내용
집중구매	■ 여러 기관이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를 말함 ■ 집중구매기관에 통보하면 일반경쟁입찰로 실행하며, 1개 업체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구매계약서를 체결함 ■ 보통 3년을 초과하지 않음
연속구매	■ 국가계속사업 예산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물품을 구매할 경우를 말함

(2)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도

- 입찰법 제11조에 따라 입찰보증은 비 자문, 물품구매, 건설 및 혼합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경쟁입찰, 제한입찰, 경쟁오퍼 실행 시 및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일반경쟁입찰과 지명입찰 실행 시 적용됨
- 입찰참여자는 입찰이 완료되기 전에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류를 제출 시 혹은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입찰보증을 해야 함
- 입찰보증금은 일반 입찰과 투자 프로젝트에서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되며,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초청서류 및 요청서류에서 규정되고, 입찰효력기간에서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계산됨

<표 1-11> 입찰보증제도

구분	주요 내용
입찰자 선정 시	■ 입찰보증금은 입찰초청서류나 요청서류에 규정됨 ■ 각 프로젝트 규모 등에 근거하여 입찰금액의 1~3%로 책정됨
(민간)투자자 선정 시	■ 입찰보증금은 입찰초청서류나 요청서류에 규정됨 ■ 각 프로젝트 규모 등에 근거하여 입찰금액의 0.5~1.5%로 책정됨

- 입찰기간이 연장된 경우, 입찰초청자는 입찰참여자에게 입찰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해야함
 - 만약 입찰참여자가 이를 거절하면 제출했던 입찰서류는 무효 처리되고, 거절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제출서류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반면 입찰참여자가 이를 동의하면, 기간만 수정하고 제출했던 서류에 다른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됨
- 입찰초청자는 낙찰자 선정 결과가 통보된 후 20영업일 이내에 부적격 입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선정된 낙찰자는 계약보증 실행 후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불반환조건)
 - 입찰참가자가 아직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에 대한 입찰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입찰완료 후 제출된 서류들을 회수한 경우
 - 입찰법상 규정위반으로 입찰취소 된 경우
 - 낙찰자 선정 통보 후 계약보증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계약서를 완성하지 않거나 완성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 공동합작 참가 시에는 대표 계약자가 입찰보증을 할 수도 있고 각자 이행할 수도 있으나 총 입찰보증금은 입찰초청서류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합작 구성원 중 한 업체라도 상기의 입찰보증금 불 반환 조건에 해당되면 다른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또한 반환되지 않음

3) 절충교역 제도⁶⁾

6) IHS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 p.18 내용 인용

- 베트남은 공식적인 절충교역 정책 및 전담기관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절충 교역 패키지 및 요구사항은 각 사안별로 평가됨
 - 해외구매의 일환으로 절충교역 계약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입찰법상 국제조달의 경우 베트남 현지 계약자 혹은 하도급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참여를 의무화함
 - 베트남은 주요 조달품목과 관련하여 연계무역협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외국 기업/정부와의 조달계약체결 시 기술이전협정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음

4) 주요 조달지원제도

<표 1-12> 베트남 주요 조달지원정책 및 관련규정

구분	관련규정
자국산/자국 업체 우대정책	입찰법 제14조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상세규정(63/2014/ND-CP) 제3조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정책	입찰법 제14조, 제27조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상세규정(63/2014/ND-CP) 제6조
친환경제품 우대정책	환경보호법 관련 의정 (19/2015/ND-CP)제47조 및 부록 III 12, 13항

(1) 자국산/자국 업체 우대정책

- 입찰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물품구매 시 물품 중 국내산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하며, 자문서비스, 비 자문서비스, 건설 관련 국제입찰의 경우, 베트남 국내업체 혹은 국내와 다른 외국 업체와의 공동이행 형식을 합쳐 국내업체의 업무 담당 비중이 25% 이상이어야 함
 - 우대 적용방식은 낙찰자 선정 관련 심사에서 가점을 주거나 비우대자의 입찰 가격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과하여 평가함
 - 국제 협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2014년 제정된 ‘낙찰자 선정에 관한 상세규정(63/2014/ND-CP)’ 제3조에 근거한 혼합입찰 경우, 총 비용의 25% 이상을 국내비용으로 제안하거나 물품구매 입찰의

경우 총 금액의 25%이상을 국내산 제품 구매로 제안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우대조치 : 제안 서류 평가 시 총점수의 7.5% 가점)

(2) 사회적 약자 기업 우대정책

- 자문서비스, 비 자문서비스, 건설 관련 국내입찰에서 여성 노동자, 장애인 혹은 상이군인 노동자의 비중이 25%인 소기업에 대한 입찰 선정심사 시 우대를 명시함 (입찰법 제14조)
 - 마찬가지로, 우대 적용방식은 낙찰자 선정 관련 심사에서 가점을 주거나 비 우대자의 입찰가격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과하여 평가하며, 국제 협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에 관한 상세규정(63/2014/NĐ-CP)’ 제6조에 근거하여 5억 동 이하 (한화 약 3,000만 원)의 건설입찰의 경우, 영세기업 및 소기업만 참가 가능함
- 또한 입찰법 제27조에서는 사업규모가 작은 프로젝트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지방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해당 지방의 주민공동체 일부 혹은 모두 공동 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친환경제품에 대한 우대정책

- 2015년 발행된 환경보호법 관련 19/2015/NĐ-CP 의정 제47조 및 부록 III 12, 13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의 입찰시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
 -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으로 만든 제품, 친환경 기름, *diezen*, 바이오 연료, 바이오 석탄,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조류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등이 해당함
 - 그 외 동 법에 의거하여 제품으로부터의 유해물질 등의 미 배출 처리 후에만 유통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은 입찰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

(4) 전자조달의 활용

- 일반조달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조달사이트에 게재되나, 국방조달을 위한 별도의 전자조달사이트는 2019년 12월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음

제2장

국방조달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1. 입찰준비단계
2. 입찰참여단계
3. 계약체결 및 협상 단계
4. 사후관리

제2장 국방조달 프로세스별 참여방법

- 베트남 국방조달의 경우 별도의 입찰법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달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입찰법에 따라 조달을 진행하며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 국방조달시장의 참여가 가능함

<표 2-1> 입찰유형별 입찰자 선정과정

유형	과정 개요
일반경쟁입찰/ 제한입찰/지명입찰/ 직접구매	입찰자 선정 준비 → 입찰자 선정 진행 → 입찰 서류 평가 → 심사 진행 및 낙찰 결과 통보 → 계약서 체결
지명입찰(간략화)	입찰자에게 초안 계약서 발송 → 합의 및 계약서 완성 → 결제 제출 → 계약서 체결
경쟁오퍼	입찰자에게 견적 요청 → 견적서 제출 → 견적서 평가 및 계약 합의·결제 제출 및 낙찰 결과 통보 → 계약서 체결

- 국방조달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형식인 일반경쟁입찰과 지명입찰로 진행되는 절차를 토대로 방산기업의 입장에서 참여방법을 기술함(무기체계 제외)

1. 입찰준비단계

- 베트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앞서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인증 및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의 취득이 필요함
 - 동 선행조사 시 단순한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및 제품과 관련한 현지 수요 및 법·제도 분석, 재정적 지원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진출품목과 관련한 필요인증 획득 및 현지화 작업, 그리고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의 경우, 입찰참여단계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나 입찰평가 후 낙찰자로 선정되어 방위산업계약 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발급에 최대 1개월이 소요되므로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인증과 함께 미리 취득해 두는 것이 유리함
 - 동 증명서 필수 발급분야 및 제외분야, 필요서류 및 발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음

<표 2-2>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필수발급 및 제외분야

구분	주요 내용
필수 발급분야 ⁷⁾	- 방산물자 생산 연구 및 고도의 과학기술 응용, 생산, 수리 및 무기 현대화, 군용 장비, 기술 장비 제조, 수리 및 개량, 무기, 화약 및 기술설비 근대화를 위한 국방과 안전보장용 진수제, 폭발물, 화학물질, 방사성물질 생산 - 국가기밀과 관련한 상거래서비스, 투자, 기술이전 및 공사 건축 기본적으로 무기, 화약, 폭발물, 군용기술장비 생산과 직접 연관되는 용역 및 용역의 구축 - 완제품 생산 및 수리, 무기용 주요 조립품, 화약, 기술장비, 화재 및 폭발물, 고위험물 등 특별공급품 조달 - 국방 및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상기 언급된 분야에서 제품 생산에서 무기, 화약, 군사기술장비, 폭발물 방출제 설계를 위한 인적자원 훈련
제외분야 ⁸⁾	- 상기 필수 발급분야 1번에서 규정된 제품들에 대한 세부 생산(주조, 열처리, 플레이팅, 정밀기계, 플라스틱 부품, 합성물 등) - 국방 및 군사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상거래서비스, 투자 및 기술이전 상기 필수발급분야 2번에 규정된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본 건축
제외대상 ⁹⁾	- 베트남 법 규정에 따라 사업투자허가증을 취득한 외국기관 및 개인 - 국방부의 수출입 계약승인을 받은 무기 혹은 군사기술장비를 구매 및 공급하는 외국기관 및 개인

<표 2-3> 방위사업참여 적합성 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구분		주요 내용
국내	기관	■ 기관관련 주요 정보 및 제품, 주요 사업분야가 명확히 기입된 방위산업활동 참가신청서 원본 1부 ■ 기업설립결의서, 지사 리스트 및 주소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무기관에 의해 발행된 화재예방 및 소화조건 충족 증명서와 보안 및 순서조건충족 증명서 사본 각 1부 ■ 감사를 거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사본 1부 ■ 대표 및 관리자 리스트와 이력 요약본 사본 1부 ■ 관리기관에 의해 증빙된 이력서, 대학 증명서를 포함한 책임자 및 부책임자 관련 서류 사본 1부 ■ 기술규격서, 현장설계기술 생산 라인, 생산 프로세스 기술 서류 사본 각 1부 ■ 주무기관에 의해 발급된 생산시설 환경기준 충족 증명서 사본 1부
	개인	■ 참가자에 대한 주요 정보 및 제품 그리고 주요 활동분야가 명확히 기입된 방위산업활동 참가 신청서 원본 1부 ■ 참가를 희망하는 방위산업활동 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주무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전문 자격증 사본 1부 ■ 재정능력 증빙서류 사본 1부 ■ 이력서 사본 1부
국외	기관	■ 기관관련 주요 정보 및 제품, 주요 사업분야가 명확히 기입된 방위산업활동 참가신청서 원본 1부 ■ 기업설립결의서, 가맹 멤버 리스트 및 주소 사본 각 1부 ■ 감사를 거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사본 1부 ■ 대표 및 관리자 리스트 및 이력 요약본 사본 1부 ■ 기술조건, 현장설계기술 생산라인, 생산 프로세스 기술 서류 사본 각 1부 ■ 방위산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베트남 관계 당국의 토지임대결의서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개인	■ 참가자에 대한 주요 정보 및 제품 그리고 주요 활동분야가 명확히 기입된 방위산업활동 참가 신청서 원본 1부 ■ 참가를 희망하는 방위산업활동 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주무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전문 자격증 사본 1부 ■ 재정능력 증빙서류 사본 1부 ■ 이력서 사본 1부 ■ 법률 규정에 따른 베트남 거주증 및 여권 사본 1부 ■ 해외 거주지역의 지역 행정기관이 증빙하는 이력서 사본 1부 ■ 합작투자 계약서 및 사업협력 계약서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및 해외 거주중인 베트남인

자료 : 34/2012/TT-BQP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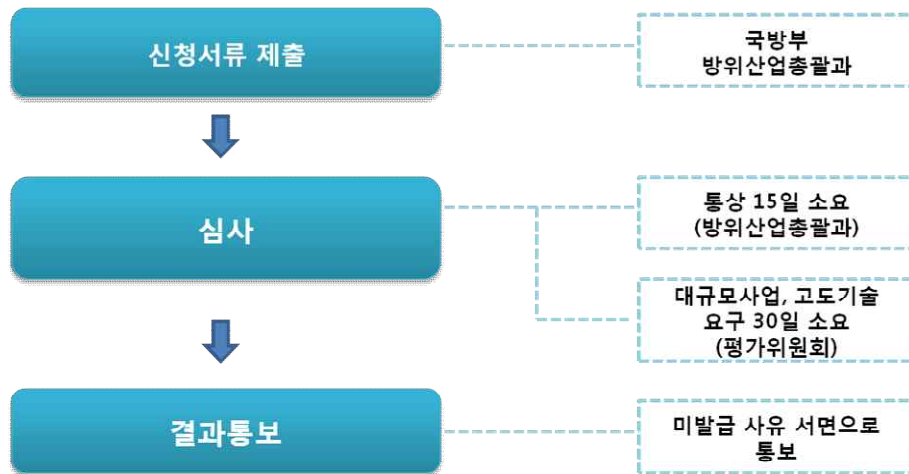
7) 34/2012/TT-BQP 제4조

8) 34/2012/TT-BQP 제5조

9) 34/2012/TT-BQP 제6조

<참고> 베트남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획득절차

1. 국방부 방위산업총괄과(GDDI)에 신청서 제출
 - 1-1. 완비된 신청서류 수령 후 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조직, 기관 및 개인은 평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증명
 - 1-2. 방위산업총괄과는 서류 수령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를 평가 및 발급함 (산업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방위산업총괄국은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수립함. 이 경우 평가 및 증명서 발급기간은 완비된 서류 수령일로부터 30영업일이 소요됨)
 - 1-3. 국방부는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회신함
2. 적격성 증명서 신청 단체 및 개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 2-1. 국방부는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수여 단체 및 개인의 명단을 매년 산업통상부에 통보함
3. 지속적인 방위산업 활동 종사 및 관련분야 규정 미위반 단체 및 개인은 증명서 평가 및 재승인 절차를 면제받음
 - 3-1.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 및 개인이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떠한 방위 산업활동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 재발행을 위한 평가를 재 실시해야함



<그림 2-1>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발급절차

- 방위산업참여 적합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격증 평가, 승인 및 수여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권한은 국방부 방위산업총괄과에 있음¹⁰⁾
 - 방위산업총괄과장은 서류심사 결과 혹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기인하여 기관 및 개인에게 증명서를 수여하며, 증명서 수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류를 제출한 기관 및 개인에게 명확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발부함
 - 방위산업총괄과는 서류 수령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방위산업참여 적합성 증명서를 평가 및 발급해야함. 다만 해당 방위산업부문이 복잡하고 규모가 크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및 증명서 발급기간은 완비된 서류 수령일로부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됨
 - <표 2-3>에 명시된 기관 및 개인이 방위산업참여 적합성 증명서 발급신청 시 법률 규정에 따른 평가비용을 방위산업총괄과에 지불해야 함

10) 34/2012/TT-BQP 제8조~12조

- 또한 현행 베트남 입찰법 상 국제조달 시 외국입찰자는 현지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와 입찰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한 파트너십 형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현지화가 필수불가결 함
- 현지 법인설립 형태 중 지접 설립의 경우 회사 등록 혹은 설립일로부터 최소 5년 간 사업활동을 시행했다는 조건 등이 요구되므로 베트남 현지 회사설립 및 청산관련 절차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음

<참고> 외국기업의 베트남 회사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2014년 투자법 67/3025/QH13은 2014년 11월 26일 국회 승인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2005년 투자법 59/2005/QH11을 대신하여 발효되었음. 투자법 67/2014/QH13 일부조항의 세칙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2015년 11월 12일자 정부령 118/2015/ND-CPsms 2015년 12월 27일부터 유효해짐. 투자 프로젝트 및 외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필요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외자 100%의 기업설립절차 (2014년 개정투자법)

Step 1 : 투자프로젝트 등록

프로젝트 등록 완료 후, 외국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됨 (해당 증명서에 프로젝트 코드가 기재됨) 투자법 67/2014/QH13 및 정부령 118/2015/ND-CP에 따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투자 프로젝트 실시신청서 (소정의 양식)
- 투자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 (등기부 혹은 정관, 법적대표자의 여권 또는 개인 투자자의 여권)
- 투자프로젝트 제안서 (소정의 양식)
 - a. 조건부 프로젝트 : 국가 또는 수상, 인민위원회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
 - b. 그 외 프로젝트 : 승인 불필요
- 재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2년간의 결산보고서, 투자자의 재무지원서약서, 혹은 금융기관의 재무보증서약서)
- 이전제한기술 리스트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기술증명서

투자자는, 투자법 67/2014/QH13의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규정된 투자방침결정에 해당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등록증명서 발행 전, 투자방침결정절차를 이행 할 필요가 있음. 투자방침결정 신청서류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국회, 정부수상, 부처 레벨의 인민위원회 중 어느 곳에서 승인을 받음. 프로젝트 규모는, 투자법 67/2014/QH13의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음. 투자방침결정 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상기 투자등록증명서발행의 신청서류와 동일함. 다만, 국회, 수상의 승인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신청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생지조성, 이주, 재정착에 관한 계획안 (있는 경우)
- 환경영향 초기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프로젝트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효과의 평가
- 특수 메커니즘, 정책의 제안 (있는 경우, 국회가 결정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방침결정 수령 후에는,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함

Step 2 : 기업등록

절차등록 완료 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기업등록증명서가 발행됨 (세금코드는, 동 증명서에 있는 기업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됨)

기업법 68/2014/QH13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기업등록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기업등록신청서 (소정의 양식)
- 회사정관
- 회사의 사원총회 구성원 리스트 (2인 이상의 유한회사) 혹은 설립주주 및 외국인인 주주 명단 (주식회사)

- 투자자 증명서류 (등기부, 정관, 법적대표자의 여권 및 개인투자자의 여권)
- 투자등록증명서 공증판

2017년 2월 말 시점 기준으로 관할기관은 상세 가이드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 기업설립신청서류에는 아직 통일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업등록을 보족(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부령 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절차가 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지법인 형태

▶ 회사형태:

- 1인 유한회사 : 소유자가 단체 또는 개인 1인인 유한회사
- 2인 이상 유한회사 : 소유자가 단체 또는 개인 2인 ~ 50인인 유한회사
- 주식회사 : 3인 (단체 또는 개인) 이상의 출자자가 필요함. 출자자 수 상한은 없으며 정관자본은 동일 다수로 나눠짐

▶ 주재원사무소 형태

외국투자자는, 회사형태이외에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주재원사무소의 사업활동은 「연락」, 「시장조사」, 「상인의 투자활동촉진」에 있으며, 영업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지점형태

현재 베트남은 은행업, 정보산업, 법무서비스, 관리 컨설팅 서비스, 프랜차이즈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다수의 서비스업에 대하여 지점설립형태를 인정하지 않음(WTO서약)

● 회사설립과 관련한 투자 절차

회사설립에 대하여, 투자 관련 절차는 2006년 9월 22일 정부령(108/2006/ND-CP)에 상세 설명이 게재되어 있음. 투자액 및 투자분야에 따라 투자등록(등기) 혹은 투자심사가 필요함

● 주재원사무소 및 지점의 사업활동

주재원사무소에 인정되는 사업활동은 「연락」, 「사업협력 활동 촉진」, 「시장조사」, 「그 외 베트남 법률에서 인정하는 활동」으로 정해져 있음

지점에서 인정되는 사업활동은 「지점의 정관에서 정하는 활동」으로 정해져 있음. 「조건부 분야에 속하는 지점」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업활동으로 정해져 있음

●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의 요건

1. 외국상인(각 국 법률에 따른 법인 혹은 개인)이거나 베트남 법률 혹은 베트남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사업등록되어 있을 것
2. 외국상인이 등록 혹은 설립일로부터 최소 1년 간 사업활동을 시행하였을 것
3. 활동기한을 기재한 외국상인의 상당가치서류 혹은 사업등록서의 경우, 사업활동의 유효기간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간 남아있을 것
4. 주재원사무소 활동내용이 베트남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확약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할 것
5. 주재원사무소의 활동내용이 베트남 조약에 해당하지 않거나 외국상인이 베트남이 가맹한 국제조약에 참가하는 국가·지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재원사무소설립절차에서 부처의 장, 부처에 해당하는 전문관리소관의 소장(이하 전문관리부처의 부처장이라 칭함)의 승인이 필요함 (정부령 07/2016/ND-CP 제7조)

지점에 대해서는, 외국상인은 등록 혹은 설립일로부터 최소 5년간 사업활동을 시행했다는 조건 외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재원사무소 설립요건과 동일함 (정부령 07/2016/ND-CP 8조)

<참고> 외국기업의 베트남 회사 청산절차 및 필요서류

회사의 청산, 주재원사무소 폐쇄에 관한 각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회사청산절차

기업법 68/2014/QH13 제201조에 의거,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청산됨

- a. 정관에 규정된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연장결정이 없는 경우
- b. 투자자 (개인운영 기업의 경우), 합명사원전원(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혹은 소유주(유한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경우)의 결정이 있는 경우
- c. 연속하여 6개월 간 회사 사원수가 동 법에서 정하는 최소인원수를 하회하였으나 기업형태의 변경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모든 채무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 반제를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하는 것이 가능함. 베트남에서 회사청산 시 회사는 문서로 회사청산을 결정함. 청산결정서 발행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반제계획(채무가 있는 경우) 및 동 결정서를 각 사무소에 송부함

● 주재원사무소 폐쇄절차

정부령 07/2016/ND-CP 제35조에 따라 주재원사무소(이하, REP오피스)는, 다음의 경우 폐쇄됨

1. 외국기업이 가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청산하는 경우
2. 설립증명서의 기한이 끝났으나 외국기업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설립증명서의 기한이 끝났으나 상공국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4. 외국기업이 폐쇄를 신청한 경우
5. 외국기업이 설립되거나 운영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의해 폐쇄 된 경우
6. 동 정부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재원사무소의 설립 라이선스가 몰수된 경우
7. 외국기업 및 주재원사무소가 법률 규정에 따라 동 정부령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조건의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지역에 따라 절차가 변경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폐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각 해당부서에 직접 재확인 필요함

출처 : 外國企業の會社設立手続き・必要書類(JETRO), https://www.jetro.go.jp/world/asia/vn/invest_09.html

- 입찰에 참가하기에 앞서 현지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며, 방위산업 참여와 관련한 주요 베트남 방위산업 관련기관 리스트는 다음 <표 2-4>와 같음

<표 2-4> 방위산업 관련 주요기관 리스트

기관명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Ministry of Defence	No 7, Nguyen Tri Phuong, Ba Dinh, Hanoi, Vietnam	T: (+84 4) 6969-6154 F: (+84 4) 3733-4163	www.mod.gov.vn/wps/portal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54 Hai Ba Trung, Hoan Kiem, Hanoi, Vietnam	T: (+84 4) 2220-2101 F: (+84 4) 2220-2525	www.moit.gov.vn/en
General Import-Export Vanxuan Corporation(VAXUCO)	No.33B, Pham Ngu Lao Street, Phan Chu Chinh, Hoan Kiem District, Hanoi	T: (+84 4) 3733-5443 F: (+84 4) 3823-2939	www.vaxuco.vn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VCCI)	Vietnam Business Forum, 4 th Floor, 9 Dao Duy Anh Str, Hanoi, Vietnam	T: (+84 4) 3574-2022 F: (+84 4) 3574-2020	www.vcci.com.vn

2. 입찰참여단계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갖추어지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입찰법 제5조)
 -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단독 혹은 합작 형태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합작의 경우 구체적으로 규정된 책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함
 - 국제입찰 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 업체와의 합작 및 하청을 통한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므로 현지화가 불가피함

<표 2-5> 베트남 입찰참가 자격조건

입찰참가자 유형	자격조건
조직형태	▪ 국가가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보유 ▪ 재정 독립 결산 ▪ 법적으로 파산, 채무관계가 아닌 상태 ▪ 전자조달 사이트에 등록 ▪ 입찰시 경쟁성 보장 (입찰법 제6조) ▪ 입찰금지기간이 아닌 상태 ▪ 1차 서류심사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 국제입찰의 경우, 베트남 국내업체와 협력하거나 하청업자가 국내업체인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베트남 국내업체의 해당 프로젝트 전체실행능력 부족을 증명해야 함
개인	▪ 베트남 국가의 법령에 따라 민사능력 보유 ▪ 적합한 전문 자격증 보유 ▪ 법적으로 활동 등록 ▪ 형법재판 중이 아닌 자 ▪ 입찰금지기간이 아닌 상태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필요	

- 개인이 입찰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입찰교육 자격증 및 여타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해당 경력과 언어자격증 등도 보유해야 함
 - 입찰 시 사용되는 언어는 국내입찰 시에는 베트남어 사용, 국제입찰 시에는 영어 혹은 베트남어와 영어 이중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언어역량이 요구됨
-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면 각 부처에서 오프라인으로 벤더등록을 해야 하며, 입찰법상 온라인으로 벤더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 7월부터는 모든 업체들이 온라인으로만 벤더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을 언급함¹¹⁾

11) 베트남 기획투자부 조달담당자 인터뷰(2015.10.20.) 시 조사된 내용이나 해당 계획이 실현중인지는 현재 확인 불가능 함

- 외국기업은 국제입찰참여시 벤더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나, 국내입찰의 경우 단 1%라도 투자하여 합작한 베트남 현지법인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전자조달 사이트에 벤더명단이 최종적으로 등재되어야 사실상 입찰자격이 주어짐
- 영업법에서 규정하는 베트남 내 금지업종을 제외하면 활동이 가능함
- 베트남 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서류는 무료로 제공되나,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요청서류는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함
 - 해당 내용은 제안요청서 내에 명시되며,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조달 사이트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내에 관련 서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서식을 활용하여 베트남어로 서류를 작성함. 단, 국제입찰의 경우 영어도 허용되므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언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입찰요청서류 작성 후 입찰참가를 위한 준비기간은 베트남 국내입찰의 경우 20 영업일 이내, 국제입찰의 경우 40영업일 이내이므로 입찰마감시한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반서류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함
- 국제입찰 참가 시 입찰초청서류 내에 반드시 베트남 국내 일반노동자를 활용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¹²⁾, 입찰참가 시 베트남 업체와의 파트너십 형성 예외규정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국내 노동자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음

2) 입찰평가 및 심사

- 입찰평가 및 심사는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1단계 심사와 1단계 심사에서 적합성을 판정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적격성과 제안가격을 평가하는 2단계 심사로 이루어짐

12) 63/2014/ND-CP 제12조 제8항

<표 2-6> 입찰평가요소 및 심사 근거자료

단계	평가요소	근거자료
1단계	입찰참가자격 여부 평가	- 입찰법에 의거한 참가자격기준 확인 - 제출 제안서류 누락여부 - 증빙서류 유효여부
2단계	제안가격 적정성 여부 평가	- 재무능력 증빙서류 - 과거실적 평가서류 - 기술적 관점에서의 이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 - 응찰자 제시 가격 적정성 여부

- 비 자문 서비스, 물품구매, 건설, 혼합입찰의 경우 최저가 평가, 기술평가, 통합평가의 세 가지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평가하며 자문서비스 입찰의 경우 입찰자의 형태(조직 및 개인)에 따라 입찰서류 평가방법이 상이함

- 입찰대상별 세부 입찰서류 평가방법 및 낙찰 기준은 다음 <표 2-7>에 명시됨

<표 2-7> 입찰대상별 입찰서류 평가방법 및 기준

대상	입찰서류 평가방법	낙찰 기준
비 자문 서비스, 물품구매, 건설, 혼합입찰	■ 최저가평가: 간단하고 규모 작은 입찰에 적용됨 ■ 기술평가: 능력, 경력, 기술 등 평가함 ■ 통합평가(기술과 가격 동시 평가) : IT 입찰이나 최저가와 기술평가에 적용하지 못하는 입찰에 적용; 기술 평가 점수는 총 점수의 70%이상	■ 입찰 서류, 제안 서류 적합함 ■ 능력과 경력에 대한 요구 충족시킴 ■ 기술에 대한 요구 충족시킴 ■ 가격편차 입찰가의 10% 초과하지 않음 ■ 최저가평가, 기술평가, 통합평가에 따라 1등으로 평가된 경우 ■ 제안가격은 결재된 예산 초과하지 않음
자문 서비스 입찰	■ 입찰자가 조직인 경우: 간단한 입찰 경우 최저가평가, 고정가격 제안하는 입찰 경우 기술평가, 질과 비용 모두 중시하는 입찰 경우 통합평가를 적용. 그 중에 기술 평가 점수 70%~80%이고 가격 평가 점수 20%~30%임 ■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 제안기술 및 과거이력 평가	■ 입찰 서류, 제안 서류 적합함 ■ 기술에 대한 요구 충족시킴 ■ 최저가평가, 기술평가, 통합평가에 따라 1등으로 평가된 경우 ■ 제안가격은 결재된 예산 초과하지 않음

※ 경쟁오피 방식일 경우에는 최저가 평가방법이 적용됨

- 제안서 심사 시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최초 입찰가에서 오타수정과 편차수정의 단계를 거쳐 최종 입찰가를 확정하는데 입찰가 대비 10% 이상의 수치적 오타가 있는 제안의 경우 입찰탈락 처리되므로 철저한 오타검정이 필요함
- 오타수정 : 최초 입찰가에서 단가와 총 합계의 불일치, 단가기준 수정, 종합 견적서와 세부견적서의 상호 불일치, 세부견적서 기준 수정 등의 수학적 오타 및 소수점 혹은 단위표기, 수치누락 등의 기타 오타를 종합 검토하여 수정함
 - 이때 입찰초청지는 입찰참가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입찰참가자로부터 오타수정 동의서를 받아 수정을 진행하는데, 해당 사항에 미동의 시 탈락 처리되며 입찰가의 10%이상 수치적 오타가 있는 제안서류 또한 탈락됨
 - 오타 수정으로 인한 전체 총액의 증감은 상관없으며, 반드시 기존의 총액금액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편차수정 : 제안요청서에 따라 부족하거나 과한 내용, 입찰서류 각 부분들 간의 차이, 기술적 및 재정적 제안간의 차이 등을 수정할 수 있음
 - 공급수량의 편차가 있는 경우,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함 (제안서상 별도로 가격계산이 어려운 경우, 수정될 해당부분이 부족 오퍼 시에는 최고가, 초과 오퍼 시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수정함)
 - 기술적 및 재정적 제안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기술적 제안을 기준으로 재정적 제안을 수정함
 - 숫자와 문자간 불일치의 경우에는 문자를 기준으로 수정하며, 입찰신청서에 기재된 가격과 종합견적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세부견적서를 기준으로 수학적 오타를 수정한 후 종합견적서를 수정함
 - 오타수정시와 마찬가지로 입찰가의 10% 이상 편차수정을 하게 되면 탈락되며, 편차가치는 절대 총 가격으로 계산하여 수정 후 입찰가의 증감은 상관없음
- 입찰완료 후 전체 서류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서류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국제입찰의 경우 30영업일)이내이며, 최종승인은 심의 결과서류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 짐
 - 입찰참가 시 제출된 서류의 효력은 입찰완료일로부터 180영업일, 대규모 사업 입찰 및 2단계 입찰인 경우 210영업일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함
 - 입찰 유형별 심사기간을 철저히 숙지하여 기간 연장 등의 사안 발생 시 유연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표 2-8> 입찰완료 후 전체 서류 심사기간

유형	참가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기타 서류 심사
국내입찰	20영업일 이내	30영업일 이내	45영업일 이내
국제입찰	30영업일 이내	40영업일 이내	60영업일 이내
필요시 기간연장이 가능하나 프로젝트 추진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장기간은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저가 확정 및 수요기관의 요청사항 충족여부 등의 제안사 역량평가 완료 후 전문가팀에 의해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여러 입찰자의 입찰가가 동일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정산기간을 제시한 입찰자, 가장 빠른 납품기간을 제시한 입찰자, 가장 긴 보증기간을 제시한 입찰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 상기내용은 입찰요청서류에 명시된 규정으로, 만약 수요기관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라도 동일한 순위로 결정되므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 사료됨
- 전문가 팀은 입찰과 관련한 자료를 통합하여 평가과정에 대한 보고서와 낙찰자 선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요기관에 송부하고 수요기관이 이에 대한 최종승인을 하며, 낙찰자 선정결과 승인 후 최종낙찰자에 대한 통보는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짐

3. 계약체결 및 협상 단계

- 전자조달사이트를 통해 입찰을 진행할 경우, 수요기관은 입찰공고등록, 입찰초청서류, 본 입찰서류, 제안요청서류 등을 등록하고, 입찰자는 입찰 참가보증금 납부(계약 이행시 계약보증금 납부), 공동이행여부 합의 등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초청서류, 본 입찰서류, 제안요청서류 등을 모두 삭제하며, 개찰 후 제안 평가를 통해 계약서 체결에 진입함
-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표 2-9> 계약체결 시 활용되는 계약서 종류

종류	주요 내용
패키지 계약서	▪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서로 규정되어 있음 ▪ 계약이행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적용하고, 한 번에 혹은 여러 번 나누어 정산함 ▪ 입찰가격에는 산재보험비용, 물가상승 대비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간단한 자문서비스, 비자문서비스, 사업규모가 작은 물품/건설/혼합 입찰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됨
고정단가 계약서	▪ 계약이행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적용하고, 업무완성의 정도나 수량에 따라 고정단가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계약서를 지칭
변동단가 계약서	▪ 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합의조건에 따라 단가변경을 할 수 있으며, 업무완성의 정도나 수량에 따라 기재된 단가나 변경된 단가로 정산하는 계약서를 지칭
시간제 계약서	▪ 자문서비스 입찰에 주로 적용됨 ▪ 계약금액은 근무시간×수당비용으로 계산됨

-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는 합의가 완료된 계약서, 업무범위, 단가표,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부록, 승인서 등이 포함되며, 그 외에 구체적 입찰특성에 따라 계약 양해각서, 계약조건 합의서, 제안서, 입찰초청서류,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서도 포함됨
 - 계약변경이 있을 시에는 부록 계약서를 추가하여 계약체결을 함
- 국방조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은 계약체결 시 입찰법에 규정된 절차 및 서류 외에도 방위산업참여 적합성 증명서의 공증된 사본을 동봉해야 하므로 입찰참여 전 사전획득 해 둘 필요가 있음

<표 2-10> 일반적인 계약체결 조건

주요 내용
▪ 계약체결 시 낙찰자의 입찰서류와 제안서류가 효력이 있어야 함 ▪ 낙찰자의 계약이행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역량 등의 요건충족이 보장되어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이행을 위해 선불금, 정산자본금, 토지, 기타 등에 대한 조건 충족이 보장되어야 함

- 낙찰자 선정결과가 승인 후 계약체결 시 공동이행 계약인 경우에도 모든 구성원이 직접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체결된 계약서에는 양측 사인과 도장이 모두 표기되어야 하므로 일정 조정에 유의해야 함

- 하나의 프로젝트에 한 종류 이상의 계약을 이중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또한 계약금액은 입찰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추가업무로 인해 계약금 추가부과가 불가피한 경우 전체 프로젝트에 승인된 예산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국방부는 방위산업활동 수요에 따라 기관 및 단체가 방위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방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계약기관 및 단체는 방위산업 참여 조직 및 개인과의 방위산업계약 서명 방식을 직접주문 혹은 입찰의 두 방식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하며, 동 계약은 현행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 시 효력을 발휘함
 - 베트남 방산제품 및 서비스는 크게 Category A와 B로 분류되며, 해당 Category는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직접주문 및 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되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가 어느 Category에 해당하는 지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을 준비해야 함

<표 2-11> 방산제품 및 서비스 분류별 계약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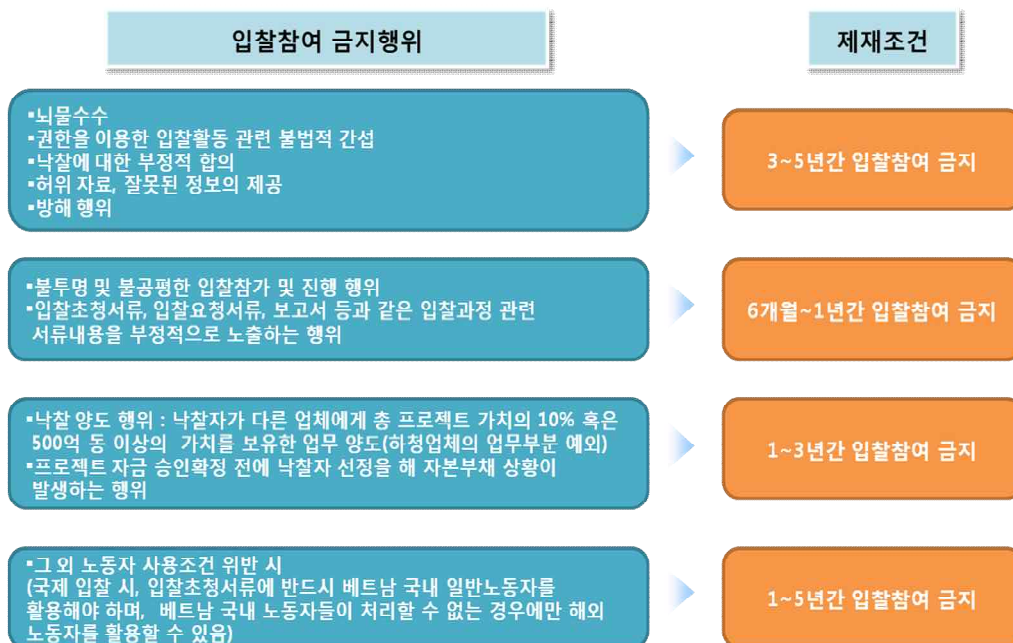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Category A 국방 산업체가 국책 및 위임형식으로 수행하는 국방, 보안제품 및 서비스	1. 무기, 탄약제조 및 수리, 기술장비, 보안경보시스템용 기계 및 장비 2. 국방용 폭발물,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생산 3. 국방 및 보안목적의 정치, 군사 및 전문문서, 서적 및 신문인쇄 4. 수상의 결정에 따른 국방 및 보안업무 수행
Category B 방위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명령 혹은 입찰을 통해 수행되는 국방, 보안제품 및 리스트	1. Category A. 1.의 기계제품 부품(구조, 열가소성, 도금, 정밀기계 가공, 플라스틱 및 복합재)과 2.의 화학물질 1종 이상 생산 2. 국방 및 안보 용역과 물품기반 구축 3. 완전한 생산 및 조립, 국방 및 보안○ 작업용 고전압 및 저전압 전력선 관리 및 유지보수 4. 도로 건설, 관리 및 유지보수, 국방 및 보안 프로젝트용 급수 및 배수 시스템

- 자문서비스 입찰, 자율구매, 공동체 참가 입찰 외에는 낙찰자가 계약보증을 해야 하며, 해당 계약보증금은 입찰초청서류, 제안요청서류에서 명시되는데 통상 입찰금액의 2~10%를 부과함
 - 계약보증기간은 계약 시작일 부터 완성일 까지이며, 계약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낙찰자가 계약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함
- 다만 계약서 효력이 부여됨에도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및 낙찰자로 인한 이행 지연에도 계약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환불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함

-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므로 관련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함
 - 계약변경은 계약서와 계약조건 부록에 규정되어야 하며, 계약서 효력부여기간 내에서만 가능함
 - 계약금 변경은 고정단가, 변경단가, 시간제 계약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변경 후 승인된 계약금액은 프로젝트 사업예산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계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①위반 혹은 고의적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의 상황인 경우, ②수요기관의 객관적인 요구에 따른 업무범위/설계/시공 변경의 경우, ③낙찰자의 책임과 상관없이 토지 이전이 늦어진 경우 등임
 - 전체 프로젝트 완성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수요기관과 낙찰자 양측 합의에 의해 계약 변경이 가능하나, 만약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사업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 가능함

4. 사후관리

- 베트남 입찰참여 금지행위와 관련한 법령은 해당행위 이행 시 수요기관까지 입찰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금지행위를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입찰참여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재정적·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입찰참여 금지, 전자조달사이트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입찰국가 및 다른 조직에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보상해야 함



<그림 2-2> 입찰참여 금지행위별 주요 제재조건

- 해당 입찰참여 금지에 대한 결정권자는 해당 지역 및 기관 관리자(부장, 차장, 지방인민위원장, 시장, 군장 등)이며, 해당 결정권자들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 기획투자부에 보고하여 전국적으로 입찰금지를 제안할 수 있고 기획투자부 장관이 최종결정함
 - 해당 위반처리과정은 공개적으로 처리되며, 위반처리문서는 위반한 공급업체와 기획투자부에 송부하고 동 사실을 입찰신문 및 전자조달사이트에 게재해야 함
- 공급업체들은 낙찰자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며, 이익침해 발생 판단 시 수요기관에 문제해결을 건의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다만,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수요기관에 별도의 문제해결 건의신청이 필요치 않으며, 수요기관의 문제해결 중에 소 제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함
- 법원의 재판을 통한 입찰 관련 분쟁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며, 소송 시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양측은 법원에 입찰완료, 낙찰후보자 선정 명단 결재, 낙찰자 선정 결재, 계약서 체결, 계약시행 등에 대한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기타 임시적 긴급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표 2-12> 낙찰자 선정 관련 사안별 이의제기 건의 절차

구분	건의 절차
낙찰자 선정 '과정'에 대한 건의 (입찰법 제92조 제1항)	① 시설공사 프로젝트인 경우, 공급업체는 입찰초청자인 수요기관으로부터 낙찰자 선정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투자자인 정부기관에 건의를 보내야 함 ② 건의 수령 후에는 7 영업일 이내에 입찰참가자인 공급업체에게 문제해결 결과문서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기간을 초과하거나 해당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신 후 5 영업일 이내에 상급 관리자에게 건의를 보낼 수 있음 ③ 해당 관리자는 건의문서 수령 후 5 영업일 이내에 문제해결 결과문서를 회신하여야 함
낙찰자 선정 '결과'에 대한 건의 (입찰법 제92조 제2항)	① 시설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공급업체는 입찰초청자인 수요기관으로부터 낙찰자 선정 결과가 통보된 후 10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인 정부기관에 건의를 보내야 함 ② 건의 수령 후 7 영업일 이내에 입찰참가자인 공급업체에 문제해결 결과문서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기간을 초과하거나 해당 결과미동의 시 회신 후 5 영업일 이내에 상급 관리자 및 지역건의해결자문협회에 건의를 송부할 수 있음 ※ 중앙건의해결자문협회는 기획투자부장인, 지역건의해결자문협회는 지역조달활동 책임자가 설립함 ③ 건의문서 수령 후 건의해결자문협회는 수요기관(투자자, 입찰초대자), 공급업체(입찰참여자)에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20영업일 이내 상급 관리자에게 해결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필요시 건의해결자문협회는 상급 관리자에게 입찰 임시중지 제안을 할 수 있고, 관리자 승인 시 5 영업일 이내에 관리자가 투자자와 입찰초대자, 입찰참여자에게 입찰중지를 통보하고 통보 후 통보문서 발송을 완료해야 함 (입찰 임시 중시기간은 투자자, 입찰초대자가 통보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관리자가 건의해결 결과문서를 발행할 때까지임) ④ 건의해결자문협회의 건의해결 보고서를 수령한 후 해당 관리자는 5 영업일 이내에 건의해결 결정 문서를 작성해야 함

- 방위산업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기관 혹은 개인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용절차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해당 보고서를 국방부 산하의 상위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¹³⁾
- 방위산업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및 개인은 서명된 방위산업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음¹⁴⁾
- 방산제품의 소유주인 기관 및 개인은 법 규정 및 방위산업계약에 명시된 제한 기간 내에 제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야 함¹⁵⁾

13) 34/2012/TT-BQP 제13조의 4

14) 34/2012/TT-BQP 제14조의 1

15) 34/2012/TT-BQP 제14조의 2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제3장 국방조달시장 진출 관련 FAQ

□ 베트남 국방조달시장 입찰참여

Q 베트남 국방조달시장 진출 시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 베트남 입찰법 상 국제조달 참가 시 베트남 현지계약자 혹은 하도급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화 해야하는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 상기 파트너십 형성 의무의 경우 현지 업체의 역량이 프로젝트 및 사업수행에 적절치 않음을 입증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또한 외국기업의 베트남 회사설립 형태 중 지점설립의 경우 회사등록 혹은 설립일로부터 최소 5년 간 사업활동을 시행했다는 조건 등이 요구되므로 베트남 현지 회사 설립 및 청산과 관련한 절차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외, 입찰 시 베트남 자국산 및 자국 업체 우대정책, 사회적 약자 기업 우대정책이 존재하므로 해당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입찰참여를 위해 반드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현행 입찰법 상 국제조달 시 외국입찰자는 현지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와 입찰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한 파트너십 형성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해당 의무 면제조건(현지 역량 부족 증명)이 존재하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베트남 국방조달시장에서 한국 방산기업이 참여가능한 유망품목은 무엇인가요?

- 베트남 군 보유 및 운용 무기 취역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에 취역된 최신화 된 무기와 1943년에 취역된 매우 낙후된 무기가 병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베트남 군 현대화 작업 및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와의 무기교역 증대 그리고 자국기술 발전을 통해 낙후된 무기의 최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 작업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베트남 방산품목의 각 품목별 수명연한을 비교분석하여, 도태시기에 가까워진 방산품목을 획득소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품목과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품목 및 수출가능 후보 품목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된 유망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무기체계	■ (획득소요 예측) 장갑차 등의 기동분야, 대잠 헬리콥터, 전투기, 훈련기, 미사일
	■ (유망품목) 훈련기, 경공격기, 기갑차량, 기동분야 부품류
전략지원체계	■ (획득소요 예측) 차량류, 엘리베이터, 공기조화기, 에어컨, 발전기, 컴퓨터, 프린터, 물탱크
	■ (유망품목) 차량류, 가구 및 가구 부품, 보안 장비, 건자재

□ 베트남 투자

Q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방산업체들은 어떤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각 사업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국방조달과 관련한 해외 방산업체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현지 기업과의 합작, 베트남 내 생산시설 설립 그리고 베트남 국가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진출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업명	진출품목	진출방식	성공요인
Kamaz	군용트럭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 진출	■ 합작투자로 인한 베트남 기업으로서 조달혜택 부여
IWI	소총 등	베트남 내 생산시설 설립	■ IWI와 베트남인민군 간의 협력사업으로, 베트남 내 공장설립으로 조달우대
Unmanned System Group	무인항공기	베트남 항공우주협회 (VASA)와 협약체결로 진출	■ 베트남 방산 관련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직접적 진출

Q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및 청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기업의 베트남 회사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

2014년 투자법 67/3025/QH13은 2014년 11월 26일 국회 승인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2005년 투자법 59/2005/QH11을 대신하여 발효되었음. 투자법 67/2014/QH13 일부조항의 세칙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2015년 11월 12일자 정부령 118/2015/ND CPsms 2015년 12월 27일부터 유효해짐. 투자 프로젝트 및 외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필요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음

외자 100%의 기업설립절차 (2014년 개정투자법)

Step 1 : 투자프로젝트 등록

프로젝트 등록 완료 후, 외국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명서가 발행됨 (해당 증명서에 프로젝트 코드가 기재됨)

투자법 67/2014/QH13 및 정부령 118/2015/ND-CP에 따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투자 프로젝트 실시신청서 (소정의 양식)
- 투자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 (등기부 혹은 정관, 법적대표자의 여권 또는 개인 투자자의 여권)
- 투자프로젝트 제안서 (소정의 양식)
 - a. 조건부 프로젝트 : 국가 또는 수상, 인민위원회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
 - b. 그 외 프로젝트 : 승인 불필요
- 재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2년간의 결산보고서, 투자자의 재무지원서약서, 혹은 금융기관의 재무보증서약서)
- 이전제한기술 리스트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기술증명서

투자자는, 투자법 67/2014/QH13의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규정된 투자방침결정에 해당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등록증명서 발행 전, 투자방침결정절차를 이행 할 필요가 있음. 투자방침결정 신청서류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국회, 정부수상, 부처 레벨의 인민위원회 중 어느 곳에서 승인을 받음. 프로젝트 규모는, 투자법 67/2014/QH13의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음. 투자방침결정 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상기 투자등록증명서발행의 신청서류와 동일함. 다만, 국회, 수상의 승인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신청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생지조성, 이주, 재정착에 관한 계획안 (있는 경우)
- 환경영향 초기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프로젝트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효과의 평가
- 특수 메커니즘, 정책의 제안 (있는 경우, 국회가 결정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방침결정 수령 후에는,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명서를 발행함

Step 2 : 기업등록

절차등록 완료 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기업등록증명서가 발행됨 (세금코드는, 동 증명서에 있는 기업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됨)

기업법 68/2014/QH13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기업등록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기업등록신청서 (소정의 양식)
- 회사정관
- 회사의 사원총회 구성원 리스트 (2인 이상의 유한회사) 혹은 설립주주 및 외국인인 주주 명단 (주식회사)
- 투자자 증명서류 (등기부, 정관, 법적대표자의 여권 및 개인투자자의 여권)
- 투자등록증명서 공증판

2017년 2월 말 시점 기준 관할기관은 상세 가이드를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설립신청서류에는 아직 통일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업등록을 보충(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부령 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절차가 이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지법인 형태

▷ 회사형태:

- 1인 유한회사 : 소유자가 단체 또는 개인 1인인 유한회사
- 2인 이상 유한회사 : 소유자가 단체 또는 개인 2인 ~ 50인인 유한회사
- 주식회사 : 3인 (단체 또는 개인) 이상의 출자자가 필요함. 출자자 수 상한은 없으며 정관자본은 동일 다수로 나뉘짐

▷ 주재원사무소 형태

외국투자자는, 회사형태이외에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주재원사무소의 사업활동은 「연락」, 「시장조사」, 「상인의 투자활동촉진」에 있으며, 영업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지점형태

현재 베트남은 은행업, 정보산업, 법무서비스, 관리 컨설팅 서비스, 프랜차이즈 서비스, 보험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다수의 서비스업에 대하여 지점설립형태를 인정하지 않음(WTO서약)

● 회사설립과 관련한 투자 절차

회사설립에 대하여, 투자 관련 절차는 2006년 9월 22일 정부령(108/2006/ND-CP)에 상세 설명이 게재되어 있음. 투자액 및 투자분야에 따라 투자등록(등기) 혹은 투자심사가 필요함

● 주재원사무소 및 지점의 사업활동

주재원사무소에 인정되는 사업활동은 「연락」, 「사업협력 활동 촉진」, 「시장조사」, 「그 외 베트남 법률에서 인정하는 활동」으로 정해져 있음

지점에서 인정되는 사업활동은 「지점의 정관에서 정하는 활동」으로 정해져 있음. 「조건부 분야에 속하는 지점」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업활동으로 정해져 있음

●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의 요건

1. 외국상인(각 국 법률에 따른 법인 혹은 개인)이거나 베트남 법률 혹은 베트남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 따라 설립·사업 등록되어 있을 것
2. 외국상인이 등록 혹은 설립일로부터 최소 1년 간 사업활동을 시행하였을 것
3. 활동기한을 기재한 외국상인의 상당가치서류 혹은 사업등록서의 경우, 사업활동의 유효기간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간 남아있을 것
4. 주재원사무소 활동내용이 베트남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확약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할 것
5. 주재원사무소의 활동내용이 베트남 조약에 해당하지 않거나 외국상인이 베트남이 가맹한 국제조약에 참가하는 국가·지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재원사무소설립절차에서 부처의 장, 부처에 해당하는 전문관리소관의 소장(이하 전문관리부처의 부처장이라 칭함)의 승인이 필요함
(정부령 07/2016/ND-CP 제7조)

지점에 대해서는, 외국상인은 등록 혹은 설립일로부터 최소 5년간 사업활동을 시행했다는 조건 외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재원사무소 설립요건과 동일함 (정부령 07/2016/ND-CP 8조)

외국기업의 베트남 회사 청산절차 및 필요서류

● 회사청산절차

기업법 68/2014/QH13 제201조에 의거,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청산됨

- a. 정관에 규정된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연장결정이 없는 경우
- b. 투자자 (개인운영 기업의 경우), 합명사원전원(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혹은 소유주(유한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경우)의 결정이 있는 경우
- c. 연속하여 6개월 간 회사 사원수가 동 법에서 정하는 최소인원수를 하회하였으나 기업형태의 변경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모든 채무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 반제를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하는 것이 가능함. 베트남에서 회사청산 시 회사는 문서로 회사청산을 결정함. 청산결정서 발행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반제 계획(채무가 있는 경우) 및 동 결정서를 각 사무소에 송부함

● 주재원사무소 폐쇄절차

정부령 07/2016/ND-CP 제35조에 따라 주재원사무소(이하, REP오피스)는, 다음의 경우 폐쇄됨

1. 외국기업이 가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청산하는 경우
2. 설립증명서의 기한이 끝났으나 외국기업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설립증명서의 기한이 끝났으나 상공국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4. 외국기업이 폐쇄를 신청한 경우
5. 외국기업이 설립되거나 운영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의해 폐쇄 된 경우
6. 동 정부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재원사무소의 설립 라이선스가 몰수된 경우
7. 외국기업 및 주재원사무소가 법률 규정에 따라 동 정부령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조건의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지역에 따라 절차가 변경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폐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각 해당부서에 직접 재확인 필요함

출처 : 外國企業の會社設立手續き・必要書類(JETRO), https://www.jetro.go.jp/world/asia/vn/invest_09.html

Q 베트남 투자 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 베트남 투자 시 주요 인센티브는 소득세 우대, 수출입 관세 우대, 토지 사용료 우대 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대상	적용 법규	비고
법인소득세 우대	■법인세법에 따라 하기 내용 적용 ■법인세 우대 ■법인세 우대 기간 제공 ■법인세 면제 기간 제공 ■법인세 감면 등	투자법 시행령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35조
수출입관세 우대	■수출입법에 따른 세금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또는 투자 우대지역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입 시 면세 가능	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수출입법 제16조
토지사용료 우대	■투자 우대분야 및 우대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법에 의거 다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토지 사용세 면제 및 삭감 - 토지 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투자법 시행령 제26조 토지법

자료 : KOTRA 국가정보 (검색일 : 2017.10.20.)

<법인세 우대 세부내용(법인세법 시행령 35조, 36조)>

■베트남 법인세는 2016년부터 인하되어 표준 단일 세율은 20%임. 일반우대지역에서는 17%, 특별 우대지역에서는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첨단과학기술분야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우대세율이 적용됨

■2013년 7월 1일부터 연매출 200억 동(약 90만 달러) 이하 기업의 경우에도 17%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로 입주하는 공단들의 경우 대부분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우대를 받으나 공단,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함

<법인세 17% 우대세율 적용대상 및 감면조건>

대상	우대세율 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일반우대지역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 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 간
협동조합 등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법인세 10% 우대세율 적용대상 및 감면조건>

대상	우대세율 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특별우대지역, 수상령으로 설치된 경제특구 - 첨단과학기술분야 - SOC 분야 - S/W 분야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 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9년 간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 분야 (“Socialization Sector” 수상령)	전 기간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 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9년 간 (특별우대 또는 일반 우대지역) 면제기간 종료 후 5년 간 (기타지역)

□ 베트남 진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활용

 베트남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 단기적으로 현지법인을 통한 진출을 모색할 경우, 다음의 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입찰준비단계				
1	시장정보 수집	방산수출지원시스템(D4B)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수출지원시스템(D4B)을 통한 해외 입찰정보 및 방산시장 동향 정보 수집 - 진출매뉴얼이나 시장동향 자료 수집	Jane's 등 방산 정보 서비스와 함께 D4B 활용, KOTRA 시장조사 서비스 등을 통해 유용한 시장정보 수집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방산교역지원센터)을 통해 해외잠재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깃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2	전문인력 및 교육 등을 통해 전담화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KOTRA)	- 해외전문인력 발굴을 위해 Contact KOREA 포털 내 DB 구축, 기업 대상 글로벌 인재 정보 제공 - 이력검증, 면접추진, 채용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 - 특정활동 비자취득 및 출입국 특혜부여 골드카드 발급	전문인력 구성을 통해 방산 특화된 시장조사에 활용, 향후 입찰참여 전담인력 확보와 연계
		신규 수출기업화 (KOTRA)	내수기업이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퇴직전문 무역인력(수출전문위원)의 1:1 밀착 지원	전담인력의 지역 및 품목 특성, 시장에 대한 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KOTRA)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 등 교육	
3	사전 마케팅 활동 및 현지 에이전트 발굴	국제 방산전시회 및 시장개척 활동 참가지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경비 일부 지원	국제 방산 전시회에 적극 동참하며, 방진회 등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 활용 국내외에서 현지 협력업체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
		산업별 특화사업 (방산물자) (KOTRA)	방산물자 관련 마케팅 및 수주지원	
		수출상담회 (KOTRA)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의 상담매칭 기회 제공	
		해외시장조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잠재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깃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KOTRA)	전 세계 120개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추진 등 해외 비즈니스 출장에 필요한 제반 활동 지원	
		무역사절단 (KOTRA)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B2B 온라인 마케팅 (KOTRA) <일반물자>	B2B e-마켓플레이스 바이코리아를 통한 상품 홍보, 해외 인콰이어리 수신, EMS국제배송 등 거래프로세스 전반 지원	
		해외전시회 (KOTRA)	해외전시회 한국관 구성 및 해외전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등	
		해외시장개척 진출 선도기업 육성 (무역협회)	상품정보 온라인 홍보, 미나사이트 제작, 빅바이어 상시 거래 알선, 바이어 DB 타깃 마케팅, 해외 비즈니스 매칭, 전문무역상사 활용 매칭 등	
		K+ 인증제도 (무역협회) <일반물자>	한국산 프리미엄 상품 인증(K+) 부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온라인 B2B 마케팅, 무역아카데미 지원 등)	
		무역촉진단 파견 (중소기업중앙회)	유망, 전략, 전문업종의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참가 진행	
		해외수출 마케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예산 활용한 지방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지원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글로벌 바이어 구매알선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에 대한 국내기업 알선 및 방한 바이어 현장방문시 통역, 무역상담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시판매장설치, 제품 테스트 마케팅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등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물자>	• 글로벌 쇼핑몰 입점지원, 눈 활용 마케팅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해외수출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반물자>	• B2B 플랫폼 고비즈 코리아 입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최적화 등 해외 마케팅 지원	
	GMD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과정을 GMD를 통해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G-PASS) 선발 (조달청) <일반물자>	•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바이어 초청, 벤더 등록 지원, 멘토링 등 교육제공, 온라인 홍보 등	
4	수출 초보 R&D (KOTRA)	•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초보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분야 R&D를 발굴 지원하여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	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투자를 지속화하며, 제품 우수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인증을 습득
	수출 유망 R&D (KOTRA)	•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분야 R&D를 발굴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DQ 마크 인증제도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분야 우수제품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 확대	
	해외인증 정보제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취급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제공 및 취득 지원	
	고부가가치 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일부(50~70%) 지원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원), 마케팅(KOTRA), 교육 및 컨설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금융 지원 등 종합 지원	수출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인 경우, 상기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참여
	월드챔프 (KOTRA)	•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자문,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깃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 시장정보 안내 등 5:5 매칭 펀드 지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수출지원센터)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 발굴,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 우대 지원	
입찰참여단계			
1	입찰정보 획득	• 상기 시장정보 수집, 사전 마케팅 활동 및 현지 에이전트 발굴 과정을 통해 획득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여 그를 통해 입찰정보 획득
2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G-PASS) 선발 (조달청)	•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파견, 바이어 초청, 벤더 등록 지원, 멘토링 등 교육제공, 온라인 홍보 등	현지에이전트와 협력하여 입찰참여를 준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 벤더등록을 추진함) ODA 사업형태로 진행될 경우, KOICA 등을 통해 입찰참여 국가간 협력으로 G2G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KOTRA 등을 통해 입찰참여
	대외협력기금(EDCF) 활용지원 (한국수출입은행)	• 개도국 정부발주 수주사업 차관조건 개선, 민간협력 차관 및 섹터개발 차관 신설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해외진출 지원 (KOICA)	• ODA 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기술료 감면 및 면제제도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기술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및 면제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중소기업 절충교역 참여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방산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절충교역 가치평가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업체간 합의된 금액에 대해 1.5배~2배까지 최중가치 인정	
	방산물자 정부간 거래 (G2G) 지원	• 국내외 유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정부간 거래 (G2G) 계약체결부터 이행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지원	
3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 지원	• 6개국 (중국, 미국, 독일, 태국, 베트남, 일본)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상표/디자인 출원 등 비용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단계별 주요 활동		활용가능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원사항	활용 시나리오
	조사		원, 최신 IP 동향 자료 제공	기술보호를 위해 제안서 작성시 해당사항을 기재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계약 및 협상 단계				
1	수출 허가	방산수출 허가제도 (방위사업청)	▪ 해외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방산품목의 경우 필수적으로 방산수출 허가를 받음
2	수출 보험 획득	환변동 보험료 지원	▪ 수출거래 환리스크 관리, 보험료 일정금액 지원	낙찰이 성립되면, 수출보험을 통해 손실위험을 예방함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커버를 위한 단기수출 보험	▪ 결제기간 2년내 수출 후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 적기 회수를 못할 경우 손실 보상 신용보험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 지원제도	▪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 등에 대해 보증료 일부 지원	
3	계약이행 및 납품	방산수출 후속군지원 제도	▪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해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 후속 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계약체결 이후 후속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수출대금 지원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맺은 대기업의 추천 동반진출 중소기업에게 자금 대출, 수출팩토링, 전대금융	수출에 발생하는 대금에 대해 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함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자금 지원	▪ 수출성장/촉진자금, 수입자금, 해외투자/사업자금 지원	
		중소·중견기업 우대 프로그램	▪ 수출초보기업,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상생금융 프로그램 기업 등의 금리우대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	▪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정책조정률/고객조정률 우대금리 ▪ 상생자금 대출, 상생협력 대출, 해외온렌딩	
		수출 관련 자금 대출	▪ 선적전 보증공사의 수출보증보험서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대출 (IBK 수출준비자금 대출) ▪ 수출강소 기업육성, 관세청 AFO 공인 획득기업 등을 위한 자금 대출 (수출기업 육성자금 대출)	
		동반성장 대출 등	▪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우대, 미래선도분야 벤처기업 금리우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금리감면, 설비투자 펀드 우대	
사후관리단계				
1	모니터링	방산수출 후속군지원 제도	▪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해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 후속 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	계약체결 이후 후속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운영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
2	분쟁해결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지식재산권 창출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모색함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설치 국가 중 분쟁수요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법률자문, 침해조사 등 소요비용 지원 (초등 대응) ▪ 분쟁대응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전 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전략 컨설팅(분쟁대응)	

<부록> 베트남 방위산업 유관기관 리스트

■ 정부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Ministry of Defence	No 7, Nguyen Tri Phuong, Ba Dinh, Hanoi, Vietnam	T: (+84 4) 6969-6154 F: (+84 4) 3733-4163	www.mod.gov.vn/wps/portal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54 Hai Ba Trung, Hoan Kiem, Hanoi, Vietnam	T: (+84 4) 2220-2101 F: (+84 4) 2220-2525	www.moit.gov.vn/en
General Import-Export Vanxuan Corporation (VAXUCO)	No.33B, Pham Ngu Lao Street, Phan Chu Chinh, Hoan Kiem District, Hanoi	T: (+84 4) 3733-5443 F: (+84 4) 3823-2939	www.vaxuco.vn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VCCI)	Vietnam Business Forum, 4 th Floor, 9 Dao Duy Anh Str, Hanoi, Vietnam	T: (+84 4) 3574-2022 F: (+84 4) 3574-2020	www.vcci.com.vn

■ 방위산업체

기관명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 - SBIC (구. Vinashin)	172 Ngoc Khanh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 (4) 3771 1212 Fax: +84 (4) 3771 1535. E-mail: contact@vinashin.com.vn	http://sbic.com.vn
Hong Ha Company	Km17, Le Thien, An Ocean, Hai Phong	-	www.ckt.gov.vn/hongha
James Boat Technology	Room 1012, 10th Floor, Pacific Place building, 83b Ly Thuong Kiet Street, Tran Hung Dao ward, Hoan Kiem district, Ha Noi	Tel: +84 43 200 7168. E-mail: info@jamesboat.vn	www.jamesboat.vn/en.html
Bason Shipyard	2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	www.basonshipyard.vn
Songthu Corporation	152, 2nd September Street, Hai Chau district, Da Nang city, Vietnam	Tel: +84 511 625666. Fax: +84 511 621964. E-mail: infor@songthu.com.vn	www.songthu.com.vn
Defence Industry Material Company(GAET)	No 102 Kim Ma Thuong, Cong Vi Commune,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 (4) 3 8325 377. Fax: +84 (4) 3 8327 710. E-mail: contact@gaet.com.vn	www.gaet.com.vn/web
Duy Khanh Company	310A Luy Ban Bich Street, Hoa Thanh Ward, Tan Phu District, Ho Chi Minh City	Tel: +84 (8) 3864 8624. E-mail: duykhanh@duykhanh.com	http://duykhanh.com
Thai Son Group	11/41 Linh Lan,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 (4) 3762 8577. Fax: +84 (4) 3762 2864. E-mail: vphanoi@thaisoncorp.com.vn	http://thaisoncorp.com.vn

기관명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Military Telecommunication General Corporation(Vittel)	No. 1, Giang Van Minh, Ba dinh, Hanoi.	Tel: +84 (4) 3762 8577. Fax: +84 (4) 3762 2864. E-mail: vphanoi@thaisoncorp.com.vn	http://vietteltelecom.vn
Technological Application and Production Company (TECAPRO)	18A Cong Hoa Street, War 12, Tan Bing District, Ho Chi Minh City	Tel: +84 (8) 3811 0181. Fax: +94 (8) 3811 0688. E-mail: tecapro@tecapro.com.vn	www.tecapro.com.vn
Electronics, Chemical, Informatics Corporation (ELINCO)	No.08 Lang Ha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 (4) 3835 0021. Fax: +84 (4) 3835 4436. E-mail: elinco@elinco.com.vn	www.elinco.vn

■ 한국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웹사이트
KOTRA 하노이 무역관	13th Fl.,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Tel : +84-24-3946-0511~8 Fax : +84-24-3946-0519/20 E-mail : kotrahanoinkbc@gmail.com	http://www.kotra.or.kr/KBC/hanoi/KTMUIU010M.html
KOTRA 호치민 무역관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1, HCMC	TEL : 84-28-3822-3944 /3950 FAX : 84-28-3822-3941 EMAIL : kotrasgn@hanmail.net	http://www.kotra.or.kr/KBC/hochiminh/KTMUIU010M.html
방산물자교역 지원센터 (KODITS)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3 KOTRA 2층	Tel : +82-2-3460-7303 Fax : 82-2-3460-7907	http://kodits.kotra.or.kr/home/homeIndex.do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28th Fl.,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Ba Dinh District, Hanoi	Tel : +84-24-3831-5110~6	http://vnm-hanoi.mofa.go.kr/korean/as/vnm-hanoi/main/index.jsp